##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이광희·정준호·박홍배

이연희 · 송재봉 · 김성환

고민정 • 이재관 • 이강일

민병덕 • 모경종 • 채현일

임호선 · 복기왕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 및 가족관계의 급견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 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를 전담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지속적인 가정법원 사법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모두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하고 있음.

이에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

역의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3 및 별표 5) 법률 제 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주지방법원란 다음에 청주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청주가정법원	청주시
--------	-----

별표 1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란 다음에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충주시

별표 1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란 다음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제천시
-------------	-----

별표 1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란 다음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	영동읍
-------------	-----

별표 3 중 대전고등법원의 청주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주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	---------------------

별표 5 중 대전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다만, 소
대전 정주	리 기기		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
			청남도
		홍성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네 엔	공주	공주시・청양군
		논산	논산시 · 계룡시 · 부여군
		서산	서산시・당진시・태안군
		천안	천안시 • 아산시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다	
	청주		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충주	충주시 • 음성군
		제천	제천시 • 단양군
		영동	영동군 • 옥천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9년 3월 1일 부터 청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 2029년 2월 28일 현재 청 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청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9년 2월 28일 현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및 영동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9년 3월 1일부터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및 영동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